예규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제 1조(정 의) (생략)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(생략)	제 1조(정 의) (생략)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(이하 “과학원장”이라 한다)(생략)	○ 약어표기 오류수정
제 4조(지정신청) ①면제물질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(이하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물질 지정신청서(이하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함께 과학원장(이하 “과학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	제 4조(지정신청) ①면제물질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(이하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물질 지정신청서(이하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	○ 약어표기 오류수정
제 11조(유효기간) 과학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1조(재검토 기한) 과학원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○ 유효기간을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하고, 재검토 기한을 명시함
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	○ 예규 시행일